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 도 자 료 2022. 8. 31.(수)

제 목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진 시가 133억원 상당 필로폰 밀수사범 검거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거나 피의자의 공개 요청이 있는 내용(제10조 제4항)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 서남부 지역(구로, 영등포 등)을 중심으로 '22. 3.~4.경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kg(시가 133억 상당, 소매가 기준)[1]를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밀수 조직원 총 8명을 적발하여 6명(구속 5명)을 기소하고,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검찰은, 세관이 공항에서 적발한 필로폰 3kg 밀수 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총책 등을 검거하였고,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조직에서 구속된 조직원 공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필로폰 1kg을 추가로 밀수하여 국내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발송책, 수거책 등을 추가 적발하였음

▣ 조직원 중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한 2명은 현재 마약범죄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지속적으로 밀반입하였는바,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하였음

※ 추가범행 방지를 위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도 전까지 캄보디아 교정당국에 감시 강화를 요청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하고, 국내로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1) 필로폰 1회분(0.03g) 당 소매가 10만 원 기준 → 약 1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